

-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업체의 책임임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f.go.kr>) 또는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(<http://theksa.or.kr>)를 확인하시고,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(☎044-200-5735~6) 또는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(☎02-6096-2034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소방청공고제2019-131호

「소방장비관리법」 제10조제1항 및 「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라 소방장비 표준규격(Korean Fire Equipment Standards)을 다음과 같이 제정, 개정 공고합니다.

2019년 12월 27일

소 방 청 장

소방장비 표준규격(Korean Fire Equipment Standards) 제·개정

규격번호	규격명칭	구 분	일 자
소방차(119구급차) 제작규격 2019-131호	119구급차 제작규격	제·개정	2019. 12. 5.

※ 제·개정 규격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(<http://www.nfa.go.kr>>정보공개>소방장비정보>표준규격)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119구급과(전화 044-205-7633, 팩스 044-205-898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산림청공고제2019-392호

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2월 27일

산 립 청 장
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개정(공포, '19.12.3)에 따라 수입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인력 및 조직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검사기관 지정기준(안 제18조의4제1항)

- (인력) 관련학과 졸업 또는 산림관련 종목의 자격증을 가진 검사인력
3명 이상 확보

- (조직) 농임산물 유통관리, 농림업 조사연구 조직을 갖춘 기관

나. 검사기관 지정결과 공개(안 제18조의4제2항)

- 검사기관 지정 지 지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 신설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